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민의 일과 여가 조화를 위한 지원 및
여가산업 육성 근거 마련〉

■ 김재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430호)

2026. 2.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국민의 일과 여가 조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신설) ·	3
2. 여가산업 육성 근거 마련(안 제17조제2항 신설)	6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김재원의원 등 10인

나. 제 출 일 : 2025. 11. 20.

다. 회부연월일 : 2025. 11.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로 유연근무, 재택근무, 워케이션(workation) 등 새로운 근무형태가 확산되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고 여가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

또한 여가산업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창의적 콘텐츠 개발과 관광·문화 산업과 연계되어 국가경제에도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여가산업 관련 창업의 촉진 및 창업기업의 육성은 여가산업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동력임에도 현행법은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국민이 새로운 근무형태를 통해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여가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기업, 청년기업, 여성 기업의 창업 촉진 및 창업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가의 질적

수준 향상과 국민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여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국민의 일과 여가 조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안 제5조제3항 신설)

개정안은 국민이 유연근무, 재택근무, 워케이션 등 다양한 새로운 근무형태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근로시간과 여가시간을 보다 합리적이고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일과 여가의 조화) ①·② (생략) <u><신설></u>	제5조(일과 여가의 조화)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유연근무, 재택근무, 워케이션(휴가지에서 일도 하고 휴식도 취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등 새로운 근무형태를 활용하여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현행 제도에 따르면 유연근무¹⁾란 시차출퇴근²⁾, 선택근무³⁾, 재택근무⁴⁾, 원격근무⁵⁾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근로기준법」 제52조⁶⁾ 및 제58조⁷⁾를 근거로 하고 있음.

워케이션(workation: work+vacation)은 유연근무 제도 중 원격근무를 활용하여 휴가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2010년대 중반부터 사용된 후 2013년 Vanessa Van Edwards⁸⁾가 공식적으로 명명한 용어⁹⁾로서 COVID-19 팬데믹을 기점으로 확산된 것임.

개정안은 유연근무 등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유연근무 등

1) https://www.worklife.kr/website/index/m2/flexitime_what.asp,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026.01.13

2)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방식

3) 1개월(신상품·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근로자가 조정하는 제도

4)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처리하는 방식

5)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처리하거나, 외부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방식

6)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7)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8) 인간 행동 연구소 ‘Science of People’ 연구원

9) [야놀자리서치] 인사이드 Vol.4. 기로에 선 워케이션...앞으로 워케이션이 나아갈 방향은. p 1.

새로운 근무형태를 활용하여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주 4.5일제 논의 등 사회적으로 ‘여가’의 가치가 중요시되는 시점에서 국민이 적극적으로 여가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행복 추구권 증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한편, 기획예산처는 유연근무 등 근로자의 근로시간 관련 제도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도 재정 지원을 병행하고 있으며, 위케이션과 관련하여 「관광진흥법」개정을 통해 지원을 위한 관련 규정이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2. 여가산업 육성 근거 마련(안 제17조제2항 신설)

개정안은 여가산업 관련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의 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여가산업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역량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여가산업의 육성) (생략) <신설>	제17조(여가산업의 육성)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산업 관련 창업의 촉진 및 창업기업의 육성, 여가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현행법 제3조¹⁰⁾는 “여가”를 자유·시간 동안 행하는 강제되지 아니한 활동으로 정의하면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¹¹⁾,

10)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가”란 자유 시간 동안 행하는 강제되지 아니한 활동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한다.
 -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 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콘텐츠, 문화콘텐츠, 디지털콘텐츠, 디지털문화 콘텐츠멀티미디어콘텐츠, 공공문화콘텐츠, 에듀테인먼트
 - 다. 「관광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관광
 - 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체육, 생활체육
2. “여가시설”이란 실내와 야외 그리고 사이버공간 등에서 문화예술, 관광, 체육, 자기계발, 사교, 놀이, 휴양, 오락 등을 목적으로 국민들이 여가활동을 할 때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공간을 말한다.
3. “여가교육”이란 여가활동, 여가시설 운용 및 관리,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여가사업 경영, 여가치유 등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4. “여가산업”이란 여가활동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제작, 전시, 제공 및 판매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여가전문인력”이란 여가교육, 여가 조사 및 연구, 여가시설 운용 및 관리,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여가산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콘텐츠 등¹²⁾, 「관광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관광¹³⁾,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체육 등¹⁴⁾이 여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가산업”을 여가활동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가산업의 범위가 넓고, 해당 분야별로 대부분 각 개별법에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

1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1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내재된 콘텐츠를 말한다.
5. “디지털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것(이용자의 몰입감 있는 경험을 위하여 현실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하여 제공하는 실감콘텐츠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 “디지털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내재된 디지털콘텐츠를 말한다.
7. “멀티미디어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과 관련된 미디어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 새로운 표현기능 및 저장기능을 갖게 한 콘텐츠를 말한다.
8. “공공문화콘텐츠”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 공립 박물관, 국립 미술관, 공립 미술관 등에서 보유·제작·전시 또는 관리하고 있는 문화콘텐츠를 말한다.
9. “에듀테인먼트”란 문화콘텐츠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 기획 및 제작된 것으로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3) 「관광기본법」

제13조(국민관광의 발전) 정부는 관광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촉구하여 건전한 국민관광을 발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여가산업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창의적 콘텐츠 개발과 관광·문화산업과 연계되어 국가경제에도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여가산업 관련 창업의 촉진 및 창업기업의 육성은 여가산업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동력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가산업 관련 창업의 촉진과 창업기업의 육성 및 여가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여가산업은 여가활동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한 산업으로 여가활동은 문화예술, 콘텐츠, 국민관광, 체육·생활체육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바 현재 여가활동별 개별법에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이에 포함되지 않거나 새로운 유형의 여가산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가 될 수 있어 여가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한편, 기획예산처는 여가산업은 관광, 문화 등 여러 산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각 산업별 소관 법령에서 육성에 관한 상세 규정을 도입하고, 이미 지원 중인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80